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970

발의연월일: 2021. 10. 26.

발 의 자:고영인·권칠승·김경만

김남국 · 김홍걸 · 이용빈

이해식 • 이형석 • 전재수

홍정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전공대학(또는 전문대학학력인정교육기관)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기사등의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1호). 법률 제 호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"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"을 "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또는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면허) ① 의료기사등이 되	제4조(면허) ①
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	
기사등의 국가시험(이하 "국가	
시험"이라 한다)에 합격한 후	
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	
야 한다.	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	1
른 <u>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</u>	<u>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또</u>
(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에	는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
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	항에 따른 전공대학
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	
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. 다	
만,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	
우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	
2에 따른 인정기관(이하"인	
정기관"이라 한다)의 보건의	
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	
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	
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	
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	
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	
사람이어야 한다.	

1	1
	·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